

1. 개정이유

시대상황과 현실에 맞는 전시법령안 정비를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전시법령정비 추진팀을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9. 00. 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”을 “법제교류협력담당관, 법령데이터혁신팀장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령데이터혁신팀장”을 “법령데이터혁신팀장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2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

1.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(이하 “전시법령”이라 한다) 정비 업무의 총괄·조정에 관한 사항
2. 전시법령 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
3. 전시법령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전시법령 정비 수요 발굴 및 사후 보완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분장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획조정관)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 감사담당관, 법제정보담당관,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 터혁신팀장을 둔다.	제4조(기획조정관) ① ----- ----- ----- 법제교류협력담당관, 법령데이 터혁신팀장 및 전시법령정비추 진팀장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감 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 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법제정보담당관은 부이 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으로 보하며, <u>법령데이터혁 신팀장</u> 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 기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 무관으로 보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령데이터혁 신팀장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 장</u>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 좌한다.	⑤ ----- ----- -----.
1. ~ 25. (생 략)	1. ~ 25. (현행과 같음)
26. <u>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 · 개선</u>	<u><삭 제></u>
27. (생 략)	27. (현행과 같음)

⑥ ~ ⑧ (생략)

<신설>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

1.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(이하 “전시법령”이라 한다) 정비 업무의 총괄·조정에 관한 사항

2. 전시법령 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

3. 전시법령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4. 전시법령 정비 수요 발굴 및 사후 보완에 관한 사항